

의안번호	2206577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5.1.10.
추 계 번호	24D59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기금의 모금)제4항 신설	외교부장관은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을 부과받은 자로부터 부과된 모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기금의 모금)제4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서면통지(안 제16조제4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모금액을 부과받은 자로부터 부과된 모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이의신청을 검토할 전담 인력이나 서면 통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모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통지 방법(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게재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2025년 계획안 기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¹⁾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²⁾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건수는 총 4,674,340건(12,000원

4,133,626건, 9,000원 540,714건)으로 모금액은 총 5,447만원이고, 모금 대상 및 모금액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 부과기준

모금의 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	12,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	9,000원	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

주: 2024. 6. 4. 개정 기준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

-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